

[양식 제1호]

출생신고서 (년 월 일)				※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 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				
① 출 생 자	성 명	*한글	(성) / (명)	본 (한자)		*성별	☐ 남 ☐ 여	* ☐ 혼인 중의 출생자 * ☐ 혼인 외의 출생자
		한자	(성) / (명)					
	*출생 연월 일시		년 월 일 시 분(출생지 시각: 24시각제)					
	*출생 장소		☐ 자택 ☐ 병원 ☐ 기타					
	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							
	*주소					세대주 및 관계	의	
	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							
② 부 모	부	성명	(한자:)	본(한자)		*주민등록번호	-	
	모	성명	(한자:)	본(한자)		*주민등록번호	-	
	*부의 등록기준지							
	*모의 등록기준지							
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? 예 ☐ 아니요 ☐								
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								
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	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		
		등록기준지						
④기타 사항								
⑤ 신 고 인	*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	주민등록번호	-			
	*자격	☐ 부 ☐ 모 ☐ 동거친족 ☐ 기타(자격:)						
	주소							
	*전화		이메일					
⑥ 제출인	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		

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**형법에 의하여 처벌**받을 수 있습니다. **눈표(*)로 표시한 자료**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※ 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. 「통계법」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인구동향조사		
㉔ 최종 졸업학교	부	☐ 학력 없음 ☐ 초등학교 ☐ 중학교 ☐ 고등학교 ☐ 대학(교) ☐ 대학원 이상
	모	☐ 학력 없음 ☐ 초등학교 ☐ 중학교 ☐ 고등학교 ☐ 대학(교) ☐ 대학원 이상

※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읍면동접수	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	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
	*주민등록번호	
	년 월 일(인)	

작 성 방 법

※ 등록기준지: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
※ 주민등록번호: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
①란: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(인명용 한자)으로, 이름자는 5자(성은 포함 안 됨)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,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: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(예: 오후 2시 30분 → 14시 30분).

: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,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“(서머타임 적용)”이라고 표시합니다.

: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.

:출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(시.구의 ‘동’, 읍.면의 ‘리’) 또는 도로명주소의 ‘도로명’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.

②란: 부(父)에 관한 사항 - 혼인 외 출생자를 모(母)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,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,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“부미정”으로 기재합니다.

③란: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,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
④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
-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: 선순위자(부모)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(예: 부모 사망, 행방불명 등)

-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판서

- 외국인인 부(父)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판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: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

⑥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].

※ 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**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**입니다.

㉞란: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,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‘영표(○)’로 표시합니다.

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4 고등학교에 ‘영표(○)’로 표시

첨 부 서 류

1. 출생증명서 등 1통(다음 중 하나).

-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

-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(「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」 별지 서식)

-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(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)

-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

※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
2. 출생자의 부(父) 또는 모(母)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.

- 부(父)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(母)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.

-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(有夫女)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.

3. 자녀의 출생 당시 모(母)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(예: 모의 기본증명서) 1통(1998. 6. 14.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).

4.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(父) 또는 모(母)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(父) 또는 모(母)에 대한 성명, 출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(예: 여권, 주민등록등본, 그 밖의 증명서).

5.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.

6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]
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분증명서
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
-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
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